

의안번호	2207485
의 퇴 인	최수진 의원
회 답 일	2025. 4. 4.
추 계 번호	25B002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진흥, 원천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적극적인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기초연구진흥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기초연구진흥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동향, 연구성과, 연구성과의 활용 및 연구인력의 활동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통한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4.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교수 및 연구원의 연구휴가제도의 활용	의무규정
7	안 제11조(기초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연구시설·공동연구시설,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2조(대형 연구 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원천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대형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이하 “대형 연구인프라”라고 한다)가 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 연구인프라의 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활용체계 구축, 공동활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 연구인프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 연구인프라 확보 및 활용 관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9	안 제13조(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소의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소가 분야별 기초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1.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2.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추진 3. 기업 등 민간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촉진 4.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10	안 제14조(기초연구 성과 확산)	정부는 기초연구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성과에 기반한 기술의 실용화 및 기술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가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함(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3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5조(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장려 시책)	정부는 민간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민간이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부 또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2	안 제17조(시범사업의 실시)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3	안 제18조(학술단체 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19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0조(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기간 기초연구를 통해 성과가 탁월한 과학자를 기초연구 최고과학자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연구 최고과학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6	안 제21조(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전략적 투자 등을 위해 소관 주요 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2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음(제1항) 1. 대학 및 연구기관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7.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9.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함(제2항)	의무규정
18	안 제23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9	안 제24조(원천연구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천연구와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0	안 제25조(도전적 연구개발사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1	안 제26조(융합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제, 기술간 융합기술을 육성하여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22	안 제27조(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제3항)	
23	안 제28조(전담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3항)	
24	안 제31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 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8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현행 사업 존재 -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어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9조(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표조사)	
3	안 제11조(기초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4	안 제12조(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5	안 제13조(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소의 육성)	
6	안 제17조(시범사업의 실시)	
7	안 제18조(학술단체활동지원)	
8	안 제19조(국제공동연구지원)	
9	안 제20조(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지원)	
10	안 제21조(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11	안 제22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2	안 제23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13	안 제24조(원천연구 지원)	
14	안 제25조(도전적 연구개발사업 지원)	
15	안 제26조(융합연구의 지원)	
16	안 제27조(융합연구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등)	
17	안 제28조(전담기관의 지정)	
18	안 제31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9	안 제3조(정부의 책무)	미대상 -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0	안 제6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기관이 민관 의견 수렴을 통해 직접 수립 가능하여 연구용역 등 별도의 예산 편성 불필요
21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 현행법에 따른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 및 '24년 시행계획('24.3.21. 의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수립
22	안 제15조(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장려 시책)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장려는 시책을 마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3	안 제10조(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4	안 제14조(기초연구 성과 확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8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사업명	사업개요	2025
	개인기초연구(R&D)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 단위 연구지원	1,910,849
	집단연구지원(R&D)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	430,445
	기초연구기반구축(R&D)	연구정보, 국내·외 첨단대형연구시설 활용 지원	13,565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기초연구로 대형·장기·집단연구 수행	272,633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지원(R&D)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통해 수학분야 국가경쟁력 확보	11,369
안 제9조(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구사업과 관련된 통계는 「국가연구혁신개발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이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및 성과 분석을 수행 중 －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기초연구사업 통계연보 및 기초연구사업 투자성과분석 보고서를 발간(약 1천만원 소요)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11조(기초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8조의 현행사업인 기초연구 사업 내에 시설·장비 확보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포함되고, 2025년 기준 시설·장비 확충을 특정하는 내역사업은 아래와 같음 － 아래 내역사업 외의 다른 기초연구 사업에서도 연구자가 연구비로 시설·장비를 확충할 수 있음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개요</th><th>2025</th></tr><tr><td>개인기초연구(R&D)</td><td>신진연구자 인프라지원</td><td>30,000</td></tr><tr><td>기초연구기반구축(R&D)</td><td>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지원</td><td>4,583</td></tr><tr><td>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td><td>장비·시스템 구축비</td><td>22,770</td></tr><tr><td>국가수리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td><td>기관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td><td>65</td></tr></table>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개인기초연구(R&D)	신진연구자 인프라지원	30,000	기초연구기반구축(R&D)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지원	4,583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장비·시스템 구축비	22,770	국가수리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기관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	65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개인기초연구(R&D)	신진연구자 인프라지원	30,000													
	기초연구기반구축(R&D)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지원	4,583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장비·시스템 구축비	22,770														
국가수리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기관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	65														
안 제12조(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개요</th><th>2025</th></tr><tr><td>기초연구기반구축(R&D)</td><td>연구정보 및 국내·외 첨단대형연구시설 활용 지원</td><td>13,565</td></tr></table>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기초연구기반구축(R&D)	연구정보 및 국내·외 첨단대형연구시설 활용 지원	13,565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기초연구기반구축(R&D)	연구정보 및 국내·외 첨단대형연구시설 활용 지원	13,565														
안 제13조(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소의 육성)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개요</th><th>2025</th></tr><tr><td>집단연구지원(R&D)</td><td>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td><td>430,445</td></tr><tr><td>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td><td>기초과학연구단사업, 중이온가속기 운영사업,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사업</td><td>222,166</td></tr><tr><td>국가수리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td><td>계산의료산업수학 연구 등</td><td>4,710</td></tr></table>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집단연구지원(R&D)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430,445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기초과학연구단사업, 중이온가속기 운영사업,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사업	222,166	국가수리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계산의료산업수학 연구 등	4,710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집단연구지원(R&D)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430,445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기초과학연구단사업, 중이온가속기 운영사업,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사업	222,166													
국가수리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계산의료산업수학 연구 등	4,710														
안 제17조(시범사업의 실시)	－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의2와 동일한 조항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미래 유망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수립된 시범사업은 없는 상황으로, 향후 국가 주도하에 기초연구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18조(학술단체활동지원)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 (학술활동지원)	기초과학 진흥,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 지역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풍토 조성			12,045
안 제19조(국제공동연구지원)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개인기초연구(R&D)	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유형II(글로벌형), 신진연구-세종(국외), 글로벌 매칭형			238,484
	집단연구지원(R&D)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430,445
	기초연구기반구축(R&D)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지원			4,583
안 제20조(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지원)	세부사업	'22년	'23년	'24년	'25년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1,149	1186	818	805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1,149	1186	818	805
	□ 우수과학자포상	1,687	1,743	1,622	1,622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340	340	323	323
	·한국과학상·공학상	347	347	330	330
	·젊은과학자상	244	244	-	-
	·이달의과학기술인상·젊은과학자상	139	139	365	365
	·올해의여성과학기술인상	46	46	44	44
	·대한민국엔지니어상	200	200	190	190
	·IR52장영실상	87	87	82	82
	·올해의과학교사상	176	176	167	167
	·우수과학도상	108	108	67	67
	·올해의 최석정상	-	56	54	54
안 제21조(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 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는 종합계획, 기본계획 등은 다음과 같음				
	기본계획명	수립주기	현재차수		
	기초연구진흥기본계획	5년	5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육성 기본계획	5년	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5년	4차		
	국가생명연구자원관리활용기본계획	5년	3차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5년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5년	6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5년	4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	5년	1차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22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안 제24조(원천연구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초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별도로 정부 사업체계 中 ‘프로그램(항)’ 형태로 사업들을 묶어 추진·관리하고 있음 [프로그램(110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사업 예산현황] <table><tr><th>연도</th><th>예산</th></tr><tr><td>2020</td><td>8,538억원</td></tr><tr><td>2021</td><td>1조 220억원</td></tr><tr><td>2022</td><td>1조 1,498억원</td></tr><tr><td>2023</td><td>1조 2,307억원</td></tr><tr><td>2024</td><td>1조 1,461억원</td></tr></table>	연도	예산	2020	8,538억원	2021	1조 220억원	2022	1조 1,498억원	2023	1조 2,307억원	2024	1조 1,461억원
연도	예산												
2020	8,538억원												
2021	1조 220억원												
2022	1조 1,498억원												
2023	1조 2,307억원												
2024	1조 1,461억원												
안 제23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안 제28조(전담기관의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기초연구 포함) [한국연구재단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현황] <table><tr><th>연도</th><th>예산</th></tr><tr><td>2022</td><td>4조 3,843억원</td></tr><tr><td>2023</td><td>4조 5,596억원</td></tr><tr><td>2024</td><td>4조 2,194억원</td></tr></table>	연도	예산	2022	4조 3,843억원	2023	4조 5,596억원	2024	4조 2,194억원				
연도	예산												
2022	4조 3,843억원												
2023	4조 5,596억원												
2024	4조 2,194억원												
안 제25조(도전적 연구개발사업 지원)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개요</th><th>2025</th></tr><tr><td>한계도전R&D 사업(R&D)</td><td>국가의 현안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변혁적 기술 개발 및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구축</td><td>11,700</td></tr></table>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한계도전R&D 사업(R&D)	국가의 현안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변혁적 기술 개발 및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구축	11,700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한계도전R&D 사업(R&D)	국가의 현안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변혁적 기술 개발 및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구축	11,700											
안 제26조(융합연구의 지원)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개요</th><th>2025</th></tr><tr><td>미래개척융합 과학기술개발 (R&D)</td><td>융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주체 간 융합 연구 지원</td><td>117,944</td></tr><tr><td>전통문화혁신 성장융합연구 (R&D)</td><td>한지·한복 등 전통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td><td>633</td></tr></table>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미래개척융합 과학기술개발 (R&D)	융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주체 간 융합 연구 지원	117,944	전통문화혁신 성장융합연구 (R&D)	한지·한복 등 전통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633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미래개척융합 과학기술개발 (R&D)	융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주체 간 융합 연구 지원	117,944											
전통문화혁신 성장융합연구 (R&D)	한지·한복 등 전통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633											
안 제27조(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아래 사업으로 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개요</th><th>2025</th></tr><tr><td>미래개척융합 과학기술개발 (R&D)</td><td>융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주체 간 융합 연구 지원</td><td>117,944</td></tr></table>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미래개척융합 과학기술개발 (R&D)	융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주체 간 융합 연구 지원	117,944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미래개척융합 과학기술개발 (R&D)	융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주체 간 융합 연구 지원	117,944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31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사업명	내역사업개요	2025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R&D)	과학기술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석학으로 회원을 구성하여 각 부문별 전문성을 활용	3,13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안 제10조)

- 개정안은 정부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의 기초연구사업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학생 연구장학금 지원,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연구원의 연구휴가제도 활용 등의 환경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각 사업의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학생 연구장학금 지원 등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 연구장학금 지원 등 관련 사업(2025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25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¹⁾	기초연구 및 미래 국가전략 분야에 부응하는 창의적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이공계 우수한 학부, 석·박사 인재들을 대상으로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573
인재활용 확산 지원(R&D) ²⁾	이공계 학부-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인재 성장단계별 현장-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인재, 미취업자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재의 활용 촉진	54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³⁾	대학 기관 중심 학생인건비 지급·운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인건비 기본 지급액 보장 및 지급 수준 상승 유도	600
과학영재양성(R&D) ⁴⁾	국가 과학기술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의 기회 확대 및 내실화	14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1) 일반회계, 2240-300

2) 일반회계, 1744-412

3)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731-301

□ 기초연구 성과 확산(안 제1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초연구 결과에 따른 성과에 대한 확산 및 기술이전·실용화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기초연구 성과 확산 시책 수립,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기초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 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사업으로 실험실창업지원 사업이 있음

[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성과 확산 관련 사업(2025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25
실험실창업지원 ⁵⁾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지원	23,37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4) 과학기술진흥기금, 1734-406

5) 일반회계, 4602-307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